범죄피해자 보호 지원

1 기본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
사업기간	☑연례반복	
사업내용	○ 공모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	법인에 사업비 지원
사업비	32,000천원 (국비)	(시비)32,000천원
(당해년도)	기타 (예산 외) 〔구비〕	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이권담당관	이권담당과	김병기	박숙미	김혜영
101111	한 한 한 경 전	2133-6370	2133-6377	2133-6379

[※]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				(L 11
구 분	2019예산액 (A)	2020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	(x-)	(x-)	(x-)
	32,000	32,000	0	0
사무관리비	(x-)	(x-)	(x-)	(x-)
	2,000	2,000	0	0
민간경상사업보조	(x-)	(x-)	(x-)	(x-)
	30,000	30,000	0	0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0년 예산내역
사무관리비	

과목구분	2020년 예산내역				
	○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2,000,000원	=	2,000천원		
민간경상사업보조	○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선정단체 사업비 지원 30,000,000원*1개 단체	=	30,000천원		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
○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통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- 「범죄피해자보호법」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、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,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、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 - 「범죄피해자보호법」 제34조(보조금)
 - 「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」제34조의 2(보조금의 교부)
 - 「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」 제8조(재정지원)

□ 사업내용

- 지원대상 :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제33조(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)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한 법인 중,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
- 사업기간 : '19. 1.~12.
- 사업내용 :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활동 수행 단체에 사업비 지원
- 총사업비 : 32,000천원

□ 추진경위

-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지급(행정과에서 포괄예산 편성) : '07.~'15
- 「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」 제정 : '15. 1. 2.
- 범죄피해자 지원 총괄부서 변경(행정과 → 인권담당관) : '15. 1. 14.
- 2016년~2018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및 정산

○ 2019년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추진중

□ 2020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참	원원)
---------	-----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月		32,000	
기본계획수립	2020.01~2020.01		2020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
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 실시	2020.02~2020.02		시보 게재 및 관심단체 설명회 실시
사업참가단체 접수	2020.02~2020.02		사업참가 관심단체 대상
선정심사위원회 개최	2020.02~2020.02	1,800	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
약정체결	2020.03~2020.03		선정단체 약정체결
실무자 회계교육	2020.03~2020.03		지원단체 실무자 등 회계교육
보조금 교부	2020.03~2020.12	30,000	교부금(1차 교부금-총교부액 70%) 교부
보조금 집행 중간 점검	2020.07~2020.07		사업추진실적 중간 점검
보조금 집행 정산	2020.12~2020.12		보조금 집행 정산
최종보고회 개최	2020.12~2020.12	200	최종사업실적 및 회계점검, 정산

4 사업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7년도	○ 2017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단체 선정 및 지원사업 추진 : 30,000천원 지원
2018년도	○ 2018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단체 선정 및 지원사업 추진 : 30,000천원 지원
2019년도	○ 2019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단체 선정 및 지원사업 추진 중

□ 향후 기대효과

-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한 사업실행 능력 강화
-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의 현장 경험 및 전문성 활용을 통한 인권사각지대 해소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(단위 : 천원)

유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6	(x-) 37,600	(x-)	(x-) 0	(x-) 37,600	(x-) 31,193	(x-)	(x-) 6,407
2017	(x-) 32,600	(x-)	(x-) 0	(x-) 32,600	(x-) 30,905	(x-)	(x-) 1,695
2018	(x-) 32,000	(x-) 0	(x-)	(x-) 32,000	(x-) 31,187	(x-)	(x-) 813